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'적합' 판정기준을 강화하고, 검사 부적합자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 호

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평가한 각 검사항목별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 이하의 평가”를 “검사항목을 평가한 결과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거나 시야각검사, 도로찾기검사, 추적검사 및 복합기능검사 항목 평가 결과 4등급 이하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자격유지검사”를 “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. 다만, 2회차 이후 재검사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,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은 의료적성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
제24조 중 “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”을 “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”으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,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전산망 개선 등을 감안하여,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자격유지검사(재검사를 포함한다)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검사의 판정기준) ①·② (생 략)	제6조(검사의 판정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는 별표4의 4호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각 검사항목별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 이하의 평가를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.	③ ---------- 검사항목을 평가한 결과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거나 시야각검사, 도로찾기검사, 추적검사 및 복합기능검사 항목 평가 결과 4등급 이하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재검사기간 등)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검사(이하 “신규검사 등”이라 한다)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7조(재검사기간 등) ① ----------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

	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. 다만, 2회차 이후 재검사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,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<신 설>	④ 제3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은 의료적성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제2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24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---------- ---------- 6월 30일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